



##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일	2004. 3.12
개정일	2022. 3. 1
개정차수	10차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제 1 장 총 칙

제 1조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 활동의 고도화를 위한 기획, 총괄,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동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11.20)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3. 1. 9)

제 4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 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사회복지 및 보육 관련사업 (신설 2014. 5. 1)
15. 산업체와의 인적 물적 교류 관련 (신설 2022. 3. 1)
16.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공유 및 협업 (신설 2022. 3. 1)
17. 중소기업 등 가치 창출 지원 (신설 2022. 3. 1)
18.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2. 3. 1)
1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임 원

제 5조 (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 6조 (임원의 임명)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된다.

② 감사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③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6조 ③항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자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09. 2.13)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 9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학취업처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 협력단 감사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 1, 2021. 4.15)

제10조의 2 (자체평가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교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1]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연간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 (개정 2013. 1. 9)

7. 지역사회 및 산업체 지원과 공유, 협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1)

8.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1)

9.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환류 (신설 2022. 3. 1)

10.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3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4 장 조직 및 운영

제16조 (단장) ① 단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09. 2.13)

제17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열거한 부서장 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 9)

② 부서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1. 9)

제19조 (삭제 2013. 1. 9)

제20조 (삭제 2013. 1. 9)

제21조 (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8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23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상 금

제24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개정 2009. 2.13)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1. 출연재산
2. 중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회계잉여금중 적립금

제26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7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7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8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9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13)

1. 기본재산의 양도, 중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30조 (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에 종료한다.

제34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 제 7 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36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개정 2009. 2.13)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서울대학교에 귀속된다. (개정 2011.11.20)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서울대학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0)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